

의 결



국민권익위원회

국립중앙도서관
국립중앙도서관
국립중앙도서관

국 민 권 익 위 원 회

의 결

의안번호 제2020 - 319호

의 안 명 「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(4) -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불편요인 개선-」

대상기관 17개 시·도 교육청

의 결 일 2020. 7. 20.

주 문

「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(4) -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불편요인 개선-」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라 17개 시·도 교육감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다.

이 유

별지와 같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0년 7월 20일

위원장 전 현 희

위 원 이 건 리

위 원 권 태 성

위 원 김 기 표

위 원 김 태 응

위 원 김 의 환

위 원 강 재 영

위 원 황 성 주

위 원 홍 인 옥

위 원 윤 영 훈

위 원 김 수 정

위 원 정 정 미

위 원 오 완 호

위 원 이 근 동

위 원 박 홍 규

[별지]

국민의 마음을 위한 정부혁신
보다 나은 **국민권익위원회**

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(4)
-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불편요인 개선-

2020. 7.



국민권익위원회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현황	2
III. 문제점	3
1.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단가 책정	3
2. 품질이 낮은 교복에 대한 대응 미흡	5
3. 교복 치수 측정 시 불편 유발	6
4. 품목 고정으로 바지교복 선택권 제한	6
IV. 개선방안	8
1.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비용책정 방지	8
2. 교복품질개선을 위한 조치 마련	9
3. 교복 치수 측정 시 충분한 기간 부여	10
4. 신청양식 내 바지교복 선택권 부여	10
V. 조치기한 및 조치사항	11
[붙임] 국민 설문조사 결과	12

I. 추진배경

❖ 대통령 강조사항 ❖

- ▶ “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음. **누구나 평등한 기회**를 가져야 하고, **실패해도 다시 도전**할 수 있어야”(19.6.20.)
- ▶ “정부는 **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**을 바라는 국민들, 특히 **청년들의 높은 요구**를 절감했고,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”(20.1.2.)

□ 고가교복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「교복가격 안정화 방안」(’13.7월, 교육부) 시행 및 **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***(’15학년도) 실시

*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검수, 학교회계를 통한 대금지급 등 학생의 교복구매를 주관하는 제도

○ **보편적 교육 복지를 바탕으로 한 교복의 공적 교구재적 성격**을 감안하고, **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**하기 위한 취지

□ 학교주관구매제도 하에서 교복가격은 안정화되었으나, 학생·학부모가 체감하는 **불편요인 다수**

○ 주요 요구사항은 **높은 추가금, 바지교복 선택권 제한, 낮은 품질, 촉박한 구매기한** 등에 대한 개선

* 민원 추이 : ’17.(1,282건), ’18.(825건), ’19.(991건), ’20.4월말(340건)

※ 입찰 단계까지는 「학생교복 시장분석 보고서」(’16.2월, 공정위)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완료

□ 교육청별* 「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요령」을 통해 내용을 정하나, **지역별 차이**에서 오는 **제도상의 사각지대**를 검토해 반영 필요

*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함

※ 「학교주관교복구매 요령」(’17.6월, 교육부) 이후 별도의 교육부 요령은 부재하며, 교육부 및 시·도 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 협의회 존재

□ 이에 따라 민원분석 및 설문조사,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검토하고, **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불편요인 개선 추진**

※ 추진경과 : 민원분석 및 설문조사(5월), 제도개선 방안 마련(5월), 기관협의(6월)

II.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현황

□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

- 학생용 교복의 시장규모는 생산액 기준 약 2,100억('18년, 통계청 「광업제조업조사」)으로, 중·고등학교 신입생이 고정적 수요자

※ 전국 중·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총 895,188명('19년, 한국교육개발원 「교육기본통계」)

- 교복은 학부모 경비부담 항목으로, 높은 가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'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

※ 고가교복 등장, 업체 간 담합, 학생 간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제기로 「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」('13.7월, 교육부)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

-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검수, 학교 회계를 통한 대금지급 등 학생의 교복구매를 주관하는 제도

※ 국·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주관구매 의무사항, 사립학교의 경우 자율실시

- 전국 17개 시·도 교육청별로 다르게 추진 중인 '교복지원 사업'(무상교복)과는 별개의 제도

□ 추진체계

- (교육청) 「교복구매 운영요령」, 교복가격 상한권고(교육부)를 근거로 시·도 교육청별 「교복 학교주관구매 지침」 수립·교복 상한가 설정 등

- (학교) 교복선정위원회 구성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또는 자문)를 거쳐 교복디자인 결정, 교복 구매계획 수립·추진

- (교복선정위원회) 교원, 학부모 대표,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, 낙찰업체 결정을 위한 품질심사/정성평가 기준 결정 및 심사 추진

Ⅲ. 문제점

1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단가 책정

□ 품목별 금액 비율 제출 규정 부재

- 다수 교육청의 교복 구매 지침이 총액의 상한가격* 초과 금지를 규정할 뿐, 품목별 금액 비율에 대해서는 미언급

* 동복(자켓, 바지/치마, 셔츠/블라우스, 조끼) : 〇〇〇,〇〇〇원, 하복(셔츠/블라우스, 바지/치마) : 〇〇,〇〇〇원

- 이에 따라 총액 낙찰가는 저렴하나 추가구매,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(셔츠/블라우스, 치마/바지)에 높은 단가 비율*을 적용

* 예시 : 셔츠 42000원, 재킷을 무상제공하거나 바지·치마 등의 가격이 재킷보다 높게 올라가는 경우 등

< 품목별 금액 비율 규정 현황 (교육청별) >

의무 제출	선택 제출
〇〇, 〇〇, 〇〇, 〇〇, 〇〇, 〇〇, 〇〇, 〇〇, 〇〇, 〇〇	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

- 교복을 맞추며 여분의 와이셔츠나 바지, 체육복 등을 구입하는데 추가 구매분 단가가 비쌌. 와이셔츠 한 장에 인터넷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을 받음. 교복을 싸게 낙찰 받아 추가 구매분에서 마진을 얹어서 판(’20.4월 국민신문고)
- 학생들이 많이 사지 않는 재킷의 가격을 내리고, 많이 사는 와이셔츠와 바지의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업체가 꾀를 씀. 또한 특정 매장 이외에는 교복을 살 수 없음을 이용해 바지 밑단 마감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돈을 요구함. 소비자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(’20.1월 국민신문고)
- 셔츠에金を 두른 것도 아닌데 셔츠 하나 추가하니 48000원이라고 함. 무상 교복의 의미가 퇴색되었으며,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해주면 경쟁이 붙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팔지 않을 것임(’20.1월 국민신문고)

▸ 교복 업체인데 현 주소지의 학교주관구매 낙찰가격이 비현실적임. 가격은 상식적으로 자켓이 제일 비싸며, 하의, 셔츠, 조끼 순으로 비율이 낮음. 그러나 현 낙찰 업체는 자켓을 무료 증정한다고 함. 개별 단가 비율표를 검토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 바람('18.10월 국민신문고)

□ 가격 적정성 심사 기준 부재

- 품목별 금액 비율 제출을 필수로 포함하는 경우에도 적정 단가의 합리성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
- 대다수 교육청 지침의 업체선정 평가표 내 가격 적정성에 대한 배점 기준이 없어 업체의 불공정 거래 해소 유인에 한계

< 가격 적정성 배점 규정 현황 (교육청별) >

제시	미제시
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	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

□ 교복 품질에 관한 학교의 전문성 부족

- 일선 학교의 의류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섬유소재, 혼용률 등에서 부적절한 교복 사양서가 공고되는 경우가 다수

□ 납품교복 품질에 대한 사전 예방 한계

- 기재된 사양과 납품 이후 실제 원단이 불일치하는 등 품질 위협 요소가 존재

※ (예시) ○○도교육청의 경우 품질심사 결과 기존 제출된 샘플과 실제 납품 교복과의 원단 혼용률 불일치로 교복 전량회수 후 교환 조치('19.10월)

- 민원 다수 발생 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, 문제 시 사후의뢰에 그치는 등 사전에 품질을 담보하는데 한계

< 납품교복 품질관련 조치 (교육청별) >

품질검사 도입	문제 시 사후의뢰	미규정
○○	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	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

- ▶ 교복 안감이 거칠어 입을 수 없음. 학년 대표가 의견을 제기(95명 중 50명이 불편하다고 응답)했으나, 학교에서는 원단 자체가 그러하므로 다림질을 하며 입을 것을 공지함. 업체 선정 시에만 원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옷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('19.10월 국민신문고)
- ▶ 공동구매 교복 원단은 수준이하임. 학생들이 농담 삼아 사포 같다는 이야기를 함.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학생들은 적당히 참고 입거나 돈을 들여 수선해야함. 교복을 선정했으면 품질에 책임을 지기 바람 ('19.6월 국민신문고)

3

교복 치수 측정 시 불편 유발

- 업체 대리점에서 학생 개별 치수 측정 시 일정을 사전 공지 및 안내하도록 하나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방문시간 설정

※ 교복치수 측정 장소는 학교(통상 예비소집일), 학교 및 업체, 학교여건을 고려해 운영 등 시·도 교육청별로 다르게 규정 및 운영 중

- 평일 3일간만 측정을 허용하는 등 촉박한 기간 부여로, 특히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자녀와 동행이 곤란

- ▶ 업체의 치수 재는 시간이 짧아 작은 매장에서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림. 사람이 많으면 3시간 이상도 기다려야한다고 함. 측정 시간이 더 길어야 하며, 차라리 업체에서 예비소집일이나 이틀정도 학교에 들어와 한번에 치수를 재고 처리하면 업체나 학생이나 더 편할 것임('20.1월 국민신문고)
- ▶ 교복 치수 측정일이 평일이라 주말 방문을 문의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함. 워킹맘이고 회사가 멀어 업체가 문을 닫기 전 방문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내야함. 신입생이 중·고등학생 2명이라 연달아 휴가를 내야함. 주말에도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기 바람('20.1월 국민신문고)
- ▶ 교복구매 기간이 3일(1/29~1/31)이고, 안내문에도 "반드시 기간 내 측정하셔야 교복지급이 가능합니다"라고 함. 직장맘들은 이 기간에 구매를 할 수 없는데 3일로 기간을 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함('20.1월 국민신문고)

4

품목 고정으로 바지교복 선택권 제한

- 교복 신청 양식*에 여학생 품목이 스커트로 고정되어 바지를 원하는 경우 불필요한 추가 구매의 부담 발생

* 교복 구매 안내문, 교복 신청 수량(품목별) 조사 서식, 품목별 단가표(낙찰 금액 산출서), 교복규정 등

< 품목(스커트) 고정 여부 (교육청별) >

선택 가능	고정	서식 부재
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	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	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, △△

< (예시) 교복 신청 수량(품목별) 조사 서식 >

품목: 교복(동복)

품목(남학생)	단가 (원)	신청 수량	구매 가격(원)	품목(여학생)	단가 (원)	신청 수량	구매 가격(원)
자켓				자켓			
셔츠				블라우스			
바지				스커트			

- ▶ 바지로 주문하려하니 여학생은 치마로 기본 셋팅이 되어있어 바지로 전환이 안 되며 추가금액을 내야지 주문이 가능하다고 함. 남학생(바지), 여학생(치마)로 규정해 단순한 선택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('20.1월 국민신문고)
- ▶ 여중생 교복은 상의와 치마가 세트이므로 무조건 치마만 선택할 수 있고, 바지를 구입하려면 6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함. 국가에서 교복을 무상지원 해 주는 것은 좋지만, 입을 수 있는 교복을 지원받기를 원함('20.1월 국민신문고)

IV. 개선방안

1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비용책정 방지

□ 품목별 금액 비율표 제출 확인

-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공고 시 제출사항으로 '품목별 금액 비율표'를 규정

< (예시)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(양식) >

동복	품목		수량	단가비율	비고
	상의	자켓	1		
		블라우스/셔츠	1		
		조끼	1		
	하의	치마/바지	1		
	기타 부속품	예시: 넥타이 등	1		
소계			1	100%	100%

☞ 교육청별 「교복 구매 운영 요령」 내 '입찰 공고 필수 포함 사항' 개정

□ 가격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

- 제출된 품목별 금액 비율표에 대한 적정성을 제안서 평가에 반영해 교복선정위원회에서 비용책정의 합리성을 심사

< (예시) 업체선정 평가표 (양식) >

구 분	평 가 항 목	등급 및 배점기준	배점	비고
가격의 적정성(10)	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	우수	10	품목별 단가 비율표 참조
		보통	7	
		미흡	5	

※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(예시)

-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/블라우스, 치마/바지의 단가 비율이 낮게 제시되었는지 확인
- 자켓 가격은 고가이므로 전체 품목의 30~40% 이상을 차지하는지 확인

☞ 교육청별 「교복 구매 운영 요령」 내 '업체선정 평가표 양식' 개정

2 교복품질개선을 위한 조치 마련

□ 교복선정위원회 역할 내실화

- 교복선정위원회 역할 내실화*를 통해 의류·교복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안내

- 현행화 된 섬유소재, 혼용률을 바탕으로 결정된 사양이 입찰 공고에 반영되도록 권장

* 예시: 혼용률 및 섬유소재, 디자인, 성인지 감수성, 가격 등 교복선정 시 고려 필요 분야

- 혼용률 및 섬유소재 : 의류·교복에 대한 재질 등 품질관리 강화
- 디자인 : 교복 간소화, 편한 교복(활동성, 기능성), 디자인 적합성 등 검토
- 성 인지 감수성 : 남학생, 여학생 구별 없는 교복 디자인 등 의견 제시
- 가격 : 품목별 금액 비율 적절성, 단가의 합리성 등 교복가격 안정화 관련 정보 제공

☞ 교육청별 「교복 구매 운영 요령」 내 '교복구매계획 수립' 개정

□ 교복품질검사 대상학교 선정

- 납품 후 교복품질검사 대상학교를 선정(표본조사)하여 공인시험기관 의뢰를 통해 혼용률 불일치 등 불공정 거래 점검 및 대응

- 지역 내 학교 수, 교복 낙찰가, 민원 발생학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청 주관 또는 비용 지원 방식으로 실시

※ 공인시험기관(한국의류시험연구원, FITI시험연구원, KOLAS 등)에 검사의뢰

※ 불공정 거래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「지방계약법」 제31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)에 따른 처분요청 등 행정지도 가능

☞ 교육청별 「교복 구매 운영 요령」 내 '검사·검수 및 평가·환류' 개정

< (예시) ○○도교육청 교복 품질검사 추진 절차 >

내용	대상선정 및 추진계획 안내	→	예산 교부	→	검사 의뢰	→	검사결과 제출
시기	2월		3월		3-6월		6월 30일까지
방법	교육지원청→학교		도교육청→교육지원청→학교		학교→공인인증기관		학교→교육지원청→도교육청

3 교복 치수 측정 시 충분한 기간 부여

- 업체 대리점을 통한 교복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방문기간(예시: 5일 이상)을 설정

- 특히 맞벌이 학부모가 자녀와 동행할 수 있도록 측정기간에 주말을 반드시 포함

☞ 교육청별 「교복 구매 운영 요령」 내 '구매 인원 확정 및 치수 측정' 개정

4 신청양식 내 바지교복 선택권 부여

- 각종 교복 신청 양식 내 여학생 하의 품목을 '스커트/바지'로 명시해 교차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

- 교복 구매 안내문(가정통신문), 교복 신청 수량(품목별) 조사 서식, 품목별 단가표(낙찰금액 산출서), 교복규정 등 각종 양식 내 반영

☞ 교육청별 「교복 구매 운영 요령」 내 '교복 신청 양식 등 서식' 개정

< (예시) 교복 신청 수량(품목별) >

품목: 교복(동복)

품목(남학생)	단가 (원)	신청 수량	구매 가격(원)	품목(여학생)	단가 (원)	신청 수량	구매 가격(원)
자켓				자켓			
셔츠				블라우스			
바지				스커트			
				바지			

※ 바지교복 선택권 보장이 지침에 미 반영된 2개 교육청(△△, △△)은 추가로 지침 내 바지교복 선택권을 명시

V.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

□ 대상기관 : 17개 시도 교육청

□ 조치사항

과제명	조치사항
①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비용책정 방지	○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공고 시 제출사항으로 '품목별 금액 비율표'를 규정 ☞ 교육청별 「교복 구매 운영 요령」 내 '입찰 공고 필수 포함 사항' 개정 ○ 제출된 품목별 금액 비율표에 대한 적정성을 제안서 평가에 반영해 교복선정위원회에서 비용책정의 합리성을 심사 ☞ 교육청별 「교복 구매 운영 요령」 내 '업체선정 평가표 양식' 개정
② 교복품질개선을 위한 조치 마련	○ 교복선정위원회 역할 내실화*를 통해 의류·교복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안내 * 예시: 혼용률 및 섬유소재, 디자인, 성인지 감수성, 가격 등 교복선정 시 고려 필요 분야 ☞ 교육청별 「교복 구매 운영 요령」 내 '교복구매계획 수립' 개정 ○ 납품 후 교복품질검사 대상학교 선정(표본조사)으로 공인시험기관 의뢰를 통해 혼용률 불일치 등 불공정 거래 점검 및 대응 ☞ 교육청별 「교복 구매 운영 요령」 내 '검사·검수 및 평가·환류' 개정
③ 교복 치수 측정 시 충분한 기간 부여	○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방문기간(예시: 5일 이상)을 설정하고, 특히 맞벌이 학부모를 고려해 주말을 반드시 포함 ☞ 교육청별 「교복 구매 운영 요령」 내 '구매 인원 확정 및 치수 측정' 개정
④ 신청양식 내 바지교복 선택권 부여	○ 각종 교복 신청 양식 내 여학생 하의 품목을 '스커트/바지'로 명시해 교차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 ☞ 교육청별 「교복 구매 운영 요령」 내 '교복 신청 양식 등 서식' 개정

□ 조치기한 : 2021. 3월

※ '21년 교복 수령 시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

☐ **설문조사(국민생각함 114명 참여)**

- ▶ 설문주제
 -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, 아직 불편함이 많아요! (*20.5.8.~5.15.)
- ▶ 참여방법 : 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

☐ **설문내용**

1.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알고 계시나요?

답변	응답자수(명)	비율(%)
① 예	72명	63.2%
② 아니오	42명	36.8%

2. 자켓과 셔츠 중 가격이 더 높아야 하는 품목은 무엇일까요?

답변	응답자수(명)	비율(%)
① 자켓	108명	94.7%
② 셔츠	6명	5.3%

3. 여학생의 바지교복 착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
답변	응답자수(명)	비율(%)
① 선택권 보장 필요	108명	94.7%
② 치마교복으로 충분	6명	5.3%

4. 교복 품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
답변	응답자수(명)	비율(%)
① 거칠고 불편	81명	71.1%
② 평균수준 이상	33명	28.9%

5. 교복 치수측정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?

답변	응답자수(명)	비율(%)
① 주말 필수 포함	99명	86.8%
② 평일로 충분	15명	13.2%

8.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?

답변	응답자수(명)	비율(%)
① 10대	7명	6.1%
② 20대	14명	12.3%
③ 30대	30명	26.3%
④ 40대	43명	37.7%
⑤ 50대 이상	20명	17.5%

정 본 입 니 다 .

2020. 7. 21.

국 민 권 익 위 원

